

## 大學의 學徒護國團 改編 및 對政府建議案 學生自治機構 新設을 위한

本協議會는 지금까지 각 大學에 설치·운영되어 온 學徒護國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論難과 混線을 止揚·克服하고 대학의 自律秩序 확립에 입각한 새로운 學團風土 조성을 위해 學生自治機構 改編案을 政府에 건의하였는 바 (1985. 1. 24), 당국에서도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새학기부터 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學生自治機構를 新設·運營하게 되었다.

### I. 背景과 當面課題

1. 1975년 越南의 共產化와 더불어 安保體制의 일환으로 復活 운영되어 온 學徒護國團은 그동안의 상황 변화와 敎鍊教育 등 安保的 次元의 敎育體制가 개발 정착되어 機能이 重複되거나 운영상의 效率性이 약화되고 있음.
2. 각 분야에서 표방되어 온 '開放과 自律'의 강조로 學團에서도 일부 學生들이 名實相符한 學生自治體制를 희구하고 있으며 학내외의 輿論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에 同調하고 있음.
3. 따라서 새학기를 앞두고 그동안의 論難이나 混線을 극복하고 大學敎育의 本質이나 屬性을 바탕으로 대학의 自律秩序를 위한 명백한 方向이 제시되어 새로운 學團風土를 정립해 가야 할 時點에 있음.
4. 앞으로의 學團政策은 각 대학의 특성이나 실정에 알맞는 對策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基本的 方向만이 제시되어야 하며 學生自治機構의 組織과 運營도 최대한의 自律性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責任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南北對峙의 國家的 現實을 직시할 때, 戰時는 물론 平時에도 國防과 安保를 위한 大學生들의 使命이나 參與는 위축시킬 수 없는 것이며 다만 學生으로서의 身分을 감안, 보다 實效性 있게 調整되어야 할 것임.

### II. 改善方案

#### 1. 基本方向

- 가. 學徒護國團은 國家非常時에 대비한 安保機能 발휘를 위해 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事態下에서만 기능을 갖도록 함.
- 나. 平時의 學生自治活動은 현행 學徒護國團의 기능에서 分離하여 각 대학에 새로운 學生自治機構를 新設 운영하고 이는 戰時 또는 國家非常時에는 學徒護國團組織으로 自動轉換되도록 함.
- 다. 政府當局은 學生自治組織의 基本的 方向이나 大綱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각 大學이 自律的으로 마련하여 그 性質에 따라 學則이나 會則에 규정토록 함.

라. 學生自治機構는 執行機關과 議決機關으로 分立시켜 民主的으로 운영하되 敎權의 指導下에 두며 그 設置目的의 範圍와 限界 안에서만 機能을 발휘함.

마. 일부 대학에서 학교당국의 承認 없이 恣意的으로 결성된 學生會組織 등은 인정하지 않고, 이 方案에 의한 自治機構를 새로이 조직함.

바. 學徒護國團設置令을 포함, 이와 관련된 각종 法令을 정비하여 學生身分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權益을 최대한 保障하여야 함.

## 2. 改善內容(學生自治機構의 設置要綱)

가. 自治機構의 設置와 그 會員

- 모든 대학은 學生自治機構를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設하며
- 會員의 加入은 學生들의 自律的 意思決定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學徒護國團의 改編에 따른 自治活動의 參與나 民防衛動員問題와의 關聯性을 고려, 당분간은 모든 學生이 自動的으로 회원이 되게 함.

나. 名稱

- ‘總學生會’ ‘學生自治會’ 등 각 대학에서 自律的으로 결정함.

다. 活動의 範圍와 限界

- 學生自治活動을 비롯한 學·藝術 및 體育活動과 奉仕를 위주로 하되
- 自治活動의 성격울 넘는 政治的 활동에 직접 參與하거나 學校運營에 대한 不當한 干渉 등은 一切 排除함.

라. 部署와 機構

- 각 대학에서 필요한 部署와 機構를 會則으로 정하여 시행함.

마. 部署長 및 學生代表의 任務

- 會則에 明示的으로 규정함.

바. 代表의 選任方法

- 直選·間選·任命制·折衷制 등 각 대학의 實情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 결정함.

사. 幹部의 任期

- 각 大學別로 결정하여 會則에 명시함.

아. 學生代表의 被選資格

- 대학별로 결정된 一定水準 이상의 成績取

得者로서

- 對內外的으로 學生을 代表할 수 있는 者로 함.

자. 選舉運動의 制限

- 學生自治機構의 性格이나 敎育的 次元에서의 選舉運動만을 허용하고
- 金錢撒布나 暴力 등에 의한 非敎育的 得票活動 등은 일체 배제함.

차. 會費의 徵收와 執行

- 學校當局의 감독하에 學生自治機構에서 直接徵收, 管理, 執行하는 것이 原則이나
- 당분간 業務上의 便宜나 敎育的 次元에서 학교당국이 徵收 및 管理를 協調하거나 指導할 수 있음.

카. 敎權上의 監督 및 指導機構

- 指導委員會를 두며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은 學則 및 會則에 一任함.

## III. 施行時期

- 현행 學徒護國團 幹部의 任期保障을 고려하여
- 각 대학의 實情에 따라 '8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음.

## IV. 關聯資料와 參考事項

1. 현행 學徒護國團의 機能(學徒護國團設置令 第2條)

- 國家安保에 관한 精神敎育의 실시 및 활동
- 戰時, 事變 등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社會秩序 유지 및 地域防衛業務 지원
- 기타 學生自治活動

2. 民防衛隊의 組織對象(民防衛基本法 第17條)

民防衛隊는 17세부터 50세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男子로 조직하되, 國會議員, 警察公務員, 消防公務員, 矯正公務員, 軍人, 鄉土豫備軍, 外航船員, 駐韓外國軍 雇傭員, 島嶼僻地 敎育公務員과 더불어 ‘學徒護國團 團員인 學生’은 組織對象에서 제외한다.

3. 學徒護國團과 大學生敎鍊敎育과의 關係

- 大學生敎鍊敎育은 兵役法 第72條 및 學生

軍事教育實施令(1971.6.26 大統領令 第5682號)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學徒護國團制度와는 直接的 관련은 없으며

- 正規敎科目으로 1~4학기 동안에 총 6학점 128시간 및 入營敎育(12일)을 履修함으로써 現役服務時 3개월간의 短縮惠澤을 받음.

#### 4. 學徒護國團 運營上의 問題點

- 일부 대학에서 學徒護國團을 疎外하고 總學生會의 復活要求 및 任意組織 등 事例 발생
- 一般學生層도 總學生會 復活要求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呼應 同調
- 그동안 學園內外에서 계속적인 改善論議가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學園不安要因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임.

### ㊦ 主要 日誌 ㊦

- 12.21 “大學評價의 發展方向 模索을 위한 세미나” 자료 송부(전국 110개 대학)
- 1. 5 외국 대학의 施設實態調查를 위한 해  
~1.25 외 출장(외국 대학의 施設현황 자료 수집 및 대학시설 시찰)  
  / 제 1진 : 일본·미국지역 시찰  
  \ 제 2진 : 유럽지역 시찰
- 1. 7 회저 “大學敎育” 제13호 발간·배포
- 1. 8 Jean-Marc JAGOU 불란서문화관 대학·과학·기술자료센터 원장 내방
- 1. 9 英國 Sheffield 대학 Simms 부총장 내방  
  '84년도 國庫補助金 정산 보고 및  
  '8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문교부)
- 1.11 美國 하와이대학의 Edward R. Beauchamp 교수 내방
- 1.16 大學 學事業務 諮問 간담회 개최  
  · 학생 자치활동 육성방안 협의
- 1.22 1/4分期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1.24 제19차 理事會 개최  
  · 學徒護國團 改編 및 學生自治機構 設置 對政府建議案 심의 의결
- 1.25 제19차 理事會 의결사항 회원 대학에 통보
- 1.27 부산·경남지역 회원대학 보직교수 간  
  ~2. 2 담회에 본 협의회 사무총장과 총무부장 참석
- 1.27 본 협의회 전문위원 日本 히로시마대  
  ~2. 4 학이 주최하는 亞·太地域 국제세미나 참석차 출장
- 1.31 아시아재단 부총재 Robert S. Schwantes와 한국지부 대표 Ben Kremenak 내방(도서배포사업 논의 및 지속적 협력 다짐)
- 2. 8 博士學位授與者 명단 및 학위논문 제출 의뢰 공문 발송(전국 70개 회원 대학)
- 2.15 韓·日 大學間 세미나의 主題 및 發表者 선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본 협의회 새 紹介資料 송부
- 2.21 제15차 編輯委員會 회의 개최(제15호의 편집기획)